

'23년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ICT기반 혁신제품·서비스 아이디어 Biz Project 공모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ICT분야 단기(1.5년 이내) 사업화 가능한 혁신제품·서비스 분야 '23년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ICT기반 혁신제품·서비스 아이디어 Biz Project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1. 개요

- ☐ (목적) ICT 분야 사업화 가능한 제품·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및 단기 사업화를 위해 「아이디어 Biz Project 공모전」 추진
- ☐ (행사명) '23년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ICT기반 혁신제품·서비스 아이디어 Biz Project 공모전」
- ☐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 (공모대상) 중소기업¹⁾(법인) 및 법인창업 예정자²⁾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항 1호에 따른 중소기업만 참여가능
 - 2) 공모전 2차심사 서류 마감일까지 상기 중소·벤처(법인) 사업자를 설립한 자
- ☐ (공모분야) ICT분야 '단기(1.5년 이내)' 사업화 가능한 ICT 혁신 제품·서비스 분야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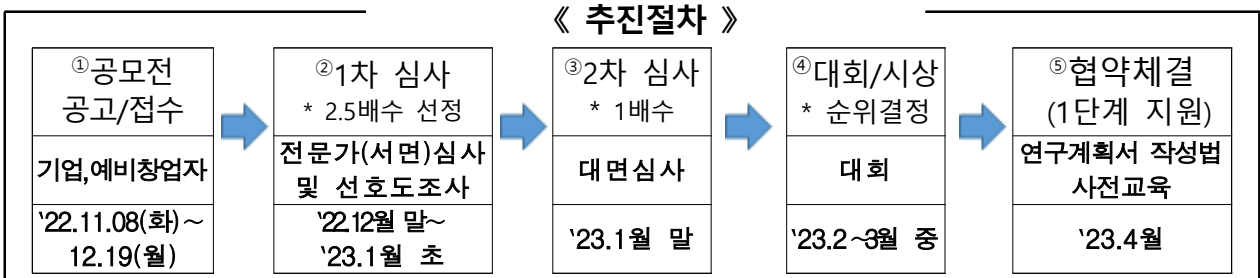
▷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연구개발 추진과제

- 딥 러닝이 적용된 컴퓨터 비전 지능형 대용량 재활용 분류 로봇 개발 및 사업화
- AI 기반 소리분류에 따른 저주파&진동 알림 웨어러블 밴드 및 실시간 음성-문자 변환 디바이스 개발
- 증강현실 인테리어 서비스를 위한 객체/도면 생성 기술 및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 전기집진기용 IoT기반 지능형 스마트 집진 플랫폼

2.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3. 공모전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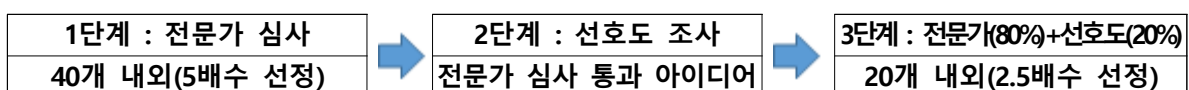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① 공고/접수

-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¹⁾(법인) 및 법인창업 예정자²⁾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항 1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만 참여가능
 - 2) 공모전 2차심사 서류 마감일까지 상기 중소·벤처(법인) 사업자를 설립한 자
- (접수기간/방법) '22.11.08(화) ~ '22.12.19(월) 16:00까지 / IITP 사업관리시스템*(EZone) 공고/접수
 - * 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s://ezone.iitp.kr/>), 마감시간은 사업관리시스템 시간 기준임.
- (접수서류) 아이디어 제안서* 등 제출
 - * 창의성/혁신성, 아이디어 활용가능성 등 심사할 수 있도록 3~5장 분량
 - * 상세 제출내용은 4.접수절차 확인

② 1차 심사

- (절차) R&D 및 사업화 전문가 심사로 5배수 선정(40개)하고, 일반인 선호도 조사* 점수를 합산하여 2.5배수 내외 선정(20개 내외)



<1차 심사 세부기준(안)>

구 분	내 용
전문가 심사 (80%)	▶(참여) 산,학,연 전문가 8명 내외 ▶(방법) 전문가 심사를 통해 위원점수 중, 최대·최소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소숫점 3자리 절사)으로 점수 산출
선호도 조사 (20%)	▶(참여) ICT에 이해가 있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의 선호도 조사점수 반영 ▶(방법) 전문가 심사 점수 상위 40개(5배수) 를 대상으로 개인별 선호 아이디어 4개를 선택하고 가장 많이 선택받은 아이디어를 20점(만점)으로 하고, 아이디어별 선택받은 갯수 비중으로 점수 부여 ex> 아이디어(A)가 50개를 선택받아 20점 만점이면, 아이디어(B)가 25개를 선택받았을 경우 10점(20점x(25개/50개)) 부여

○ (심사항목) 전문가 심사는 아이디어 창의성·혁신성(40%), R&D 추진 적합성(30%), 활용 가능성(30%) 정성평가

- * 창의성·혁신성 : 국내·외 제품·서비스와의 차별성/혁신성
- * R&D 추진 적합성 : 아이디어 후속 R&D 추진 시 기술개발·사업화 가능성
- * 활용 가능성 : 아이디어 실 생활 구현/활용성

③ 2차 심사

○ (절차) 1차 심사 통과한 아이디어에 대한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8개)**

- (제출양식) 개념계획서(가칭) 양식* 및 발표자료*(PPT,PDF)

- * 연구개발계획서(혁신법 시행규칙) 서식을 간소화하여 작성양식 구성(10장 내외)
- * 1차심사 결과안내 후 2주 이상 접수기간 부여

○ (심사항목) 추진역량, 기술성 및 사업성 심사

심사항목	심사지표	배점
추진역량 (10%)	① 연구자 및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추진역량	10
기술성 (40%)	① 아이디어의 창의성, 혁신성, 도전성	15
	② 아이디어 기술개발의 지원 필요성	15
	③ 기술개발 방법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10
사업성 (50%)	① 국내·외 관련 현황의 적절성	10
	② 사업화전략 수립 및 추진 계획의 충실성	15
	③ 단기 사업화(국내외 신시장 창출 등) 가능성 및 매출의 지속가능성	15
	④ 민간투자,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	10

○ (이의신청) 2차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후 최종확정

4] 대회/시상(최종 순위 결정전)

- (절차) 최종 선정된 8개 기업 대상 “Biz Project Challenger(가칭)” 개최를 통해 기업소개, 아이디어 및 기술개발 계획,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발표회를 통해 최종 순위 결정

- (심사기준) 2차 심사 점수(50%), 심사위원단 점수(50%)를 합산

* 기존 제품·서비스와의 창의성/차별성, 사업화(상용화) 가능성, 제품·서비스 시장 성장성 등(향후 심사대상 기관에 별도 안내예정)

- (시상) 순위별 상장(장관상 2점, IITP 원장상 6점) 및 상금 지급

구 분	상장	시상	상금
창의혁신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1점	250만원
우수기술상		1점	250만원
금 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상	1점	100만원
은 상		2점	50만원
동 상		3점	30만원
합계		8점	790만원

- 우수 아이디어 특전 및 대회품질 제고를 위해 장관상(2점) 기업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단계평가 시 인센티브 부여

5] 협약체결(1단계 지원)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최종 수상한 8개 기관(기업)은 협약체결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협약체결 및 1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

* 연구개발과제 세부사업명 : ICT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지원(R&D)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최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97억원(1단계 : 0.72억원, 2단계 : 5.25억원) 규모
- (지원기간) 최대 21개월(1단계 : 6개월, 2단계 : 15개월)이며, 1단계 수행결과 및 실적에 대해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여부 결정

4. 접수 절차

- ☐ (공고기간) 2022. 11. 08(화) ~ 2022. 12. 19(월) 16:00까지
 - (접수기간) 2022. 11. 28(월) ~ 2022. 12. 19(월) 16:00까지
 * 접수마감 시간은 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s://ezone.iitp.kr/>) 시간 기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itp.kr) 사업공고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공고문 관련 양식 확인 및 작성
- * 1차심사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전산 접수/제출하고, 2차심사부터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로 전산접수
- *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사전에 접수 요망(마감일 16시00분 이후 시스템 접속이 불가)

☐ (1차심사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제출처	비 고
1	아이디어 제안서	전자파일 (HWP)	전산 등록 (EZone)	-
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필수)	전자파일 (PDF)		신청기관/자 작성 후 제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필수)			
4	법인사업자등록증(기업필수)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기업필수)			
6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기업필수)			
○ 1, 2, 3번 서류는 공고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 6번 제출서류 설명 - 2020년, 2021년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1년도 결산재무제표만 제출 ※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21년도말 추정재무제표 제출				

- ☐ (접수문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업지원팀(☎ 042-612-8593)

5. 유의사항

- ☐ 추진과정 중 타 공모전 수상 등 아이디어 중복성 발견 시 내부심의를 통해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2차심사 통과된 아이디어 제안기업은 반드시 대회/시상에 참여해야 함.(* 미 참여시 후 순위 기관에 기회 부여)

6. 후속 연구개발사업 관련 안내

가. 주요사항

- 본 공모전을 통해 '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이며, 최종확정은 대회(심사)결과에 따름
 ※ 단,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시 협약체결 당시의 규정을 따름.
- 본 공모전 결과(정성 평가 포함) 외, 다른 우대/감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나. 정부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음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3.1월 협약시점에서의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지원기준 완화 가능

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및 현금 부담 기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 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3.1월 협약시점에서의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현금부담 기준 완화 가능
-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
- 현물은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로 부담하여야 함

라.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현금산정이 가능하고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간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연구개발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지식서비스 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 협약시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검증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 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공모전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2년 5월 8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 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 (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자발적 퇴사의 경우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원의 ICT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
 - 총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3억	3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V	V
채용 사례 1	3명				
채용 사례 2	2명			1명	
채용 사례 3	1명			1명	1명

바.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공모전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2년 5월 8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사.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 연구개발비의 25%에서 20%로 완화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75%→80%까지 지원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인정한 분야
- 산업 위기지역(산업통상자원부)
 - 군산시('22.4.5. ~ '23.4.4.)
 -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 창원 진해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18.5.29. ~ '23.5.28.)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포함

아. ICT R&D 졸업제 적용

- ICT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은 과기정통부 졸업제 대상 사업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최대 5회까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 ('19. 2. 13일 시행)

* 동 사업은 ICT R&D 졸업제 대상 사업이며, 졸업제 대상 사업을 총 5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졸업제 대상사업이 아닌 타 사업은 신청 가능

※ 관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9조(연구개발과제의 신청) ④항

자.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

○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실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 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 기한

○ 기술료 산정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 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및 납부 유예

- 신규 고용에 따른 기술료 감경
 - (신청대상) 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직접 실시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 이내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납부기술료는 2년간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경 규모 최종확정
- 실시기업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
- '6. 사. 산업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기술료 유예를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
- 후속연구개발 추진시 1단계 수행 후 단계평가를 통해 중단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기술료의 감면) 제1항에 따라 기술료 비징수

차.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동 사업의 후속연구 과제는 '일반' 보안등급에 해당함

타.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www.cear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예시 : 비영리기관)
 -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예시 : 영리기관)

하. 협약 시 제출서류 (* 후속연구 지원대상 기관만 협약 시 제출함)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제출처	비 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전자파일 (HWP)	IRIS.go.kr (전산 등록)	-
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필수)	전자파일 (PDF)		신청기관(주관/공동) 각각 작성 후 제출
3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날장 제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 각각 작성 후 제출
5	사업자등록증(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 각각 제출
6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기업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 중 기업만 제출
7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기업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 중 기업만 제출
○ 1, 2, 3, 4번 서류는 협약 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협약대상기관 개별 안내 예정)				
○ 7번 제출서류 설명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직전 2개 연도('21, '22)의 결산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23년 협약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직전년도('22) 결산 재무제표만 제출				
※ 직전년도('22)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직전년도 말 추정 재무제표 제출 (분기/반기 X)				

7. 후속 연구개발사업 유의사항

가. 사전지원제외 대상(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0조 및 [별표 5])

< 다음의 경우는 후속연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 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확인근거 (증빙서류)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	--

- ※ 모든 영리기관은 대회결과에 따라 선정 확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모전 선정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 공모전 대회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나. 기타 유의사항

- 후속연구 지원대상 선정 시,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등록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하여야 함(사용자 및 기관 회원가입 필요)
- 후속연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가.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후속연구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실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하여야 함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사업명) ICT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지원(R&D)
 - (내역사업명) 신규수요R&BD
- ☞ (지원내용)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BM을 개발하고 검증
- ☞ (지원예산)
 - (신규) (1단계) 과제당 71.5백만원 이내 / 8개 과제,
(2단계) 과제당 525백만원 이내 / 4개 과제
- ☞ (지원기간) (1단계) 6개월('23.4월~9월), (2단계) 15개월('23.10월~'24.12월)
- ☞ (지원대상) (주관) ICT중소·벤처기업(법인) (공동) 기업(법인), 대학, 연구소 등
※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 사전기획지원 전문기관 참여 필수
- ☞ (특이사항) 수요검증단을 포함한 사전기획지원 전문기관의 컨설팅 필수

□ 사업 추진체계

- (공고) 「ICT기반 혁신제품·서비스 아이디어 Biz Project 공모전」 공고('22.11월)
- (심사) 1단계(전문가 심사, 선호도조사), 2단계(대면심사)를 통해 수행 기업 선정('22.12월~'23.2월)
- (대회) 기업소개, 아이디어 및 기술개발·사업화 계획, 사업화 가능성, 투자 및 유치계획에 대한 발표회를 통해 최종 순위 결정
- (협약체결 및 지원) 비즈니스모델(BM) 개발 및 검증 등 추진('23.4~9월)
- (단계평가) 사전기획결과 우수성,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의 충실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단계 지원과제 선정('23.9월말) * 8개 → 4개과제
- (2단계 지원) 단계평가 결과를 통해 선정된 4개 기관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23.10~'24.12월)

□ 수행체계

< 1단계 : BM모델 개발 및 검증 >

- **(수행기관) BM을 사전기획지원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립하고, 수요검증단의 검증을 통해 BM 확정**
 - * 수요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BM에 반영하여 구현될 제품 또는 서비스 기능을 설계(수요분석→기술요소 도출→개념 설계→기술개발 계획 수립)
 - * **(BM 수립)** 수요검증단 구성, 인터뷰 항목 및 방법, 결과 분석계획 등이 포함된 BM 검증계획 수립(수행기관, 사전기획 전문기관) 및 개선
- **(사전기획전문기관) 수행기관과 제안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BM을 수립하고, 수요검증단*을 구성하여 BM검증 및 개선**
 - * 30명 이상의 잠재고객(전문가, 일반사용자 등)을 발굴하고, 인터뷰 등을 통해 BM검토 및 개선사항 도출(운영 가이드라인 : [참고2] 참조)
- **(BM 검증 추진체계)**
 - **(BM 검증 계획 수립)** 수요검증단 구성, 인터뷰 항목 및 방법, 결과 분석 계획 등이 포함된 **BM 검증 계획 수립**(수행기관, 사전기획지원 전문기관)
 - *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 고객 확보
 - **(BM 개선방안 도출)** 인터뷰 결과 분석을 통한 **사업화 전략 고도화**
 - * 인터뷰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업화 전략 수립의 근거 확보
 - * 해당 산업 특성, 기술적 구현 가능성, 경제적 파급력 등을 반영하여 종합 분석
 - **(BM 개선)** 도출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사업화 모델 완성도 제고

< 2단계 : 기술개발·사업화 >

- (수행기관) 기 수립된 BM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리빙랩 운영 및 개선 사항 반영 등 개방형 R&BD 수행
 - * (리빙랩 운영) 사용자 그룹화, 제품·서비스 사용 측정 및 결과반영 등 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사업화에 최적화된 리빙랩 운영 방식 설계 및 운영
- (사전기획전문기관) 리빙랩 운영 지원, 기술/사업화 관련 컨설팅 등
 - * (BM 검토 및 보완) 수행기관이 수립한 BM의 적절성 등을 검토·보완 지원
 - * (리빙랩 운영 지원) 일반인, 전문가 등을 포함한 고객 발굴, 리빙랩 세부 계획 수립 등
- (리빙랩 구성 및 운영) 수행기관과 사전기획지원 전문기관은 개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검증을 위해 리빙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 리빙랩은 1차년도내에 구성 및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차년도 상·하반기에 적용 (운영 가이드라인 : [참고3] 참조)
- (최소기능 제품개발 및 검증) 개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주요기능을 포함한 최소기능 제품을 우선 개발하여 리빙랩을 통해 성능검증 및 보완
 - * ‘리빙랩 운영 → 제품·서비스 개선’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
 - * 최소기능 제품개발 지원을 위해, 필요 시 시험·실증 기관, FaaS시스템 지원기관 등과 연계지원

□ 목적

- 제안된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모델(BM)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하여 최적의 사업화 모델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

□ 구성

- 주체 : 수행기관 및 사전기획지원 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구성
- 인원 : 30명 이상
- 방법 : 해당 제품·서비스의 실 사용자, 제품·서비스의 공급과정에서 연관되는 이해관계자(생산, 유통 등), 전문가(기술성, 사업성) 등으로 구성
- 시기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 운영

- 전문가 집단, 실무자 집단, 최종사용자 집단 등 집단 특성에 최적화된 역할 및 질의내용 구성
- 불특정 사용자를 지양하고,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관점에서 진지한 접근을 하는 현장기반 사용자 그룹이나 최종 사용자의 참여 독려

현장사용자	개발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고 활용해서 최종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 지자체, 공공조직,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조직, 사회혁신기업 등
최종사용자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주체

※ 사용자그룹은 리빙랩 운영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고, 수요검증단 중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용자는 리빙랩에도 참여 가능

- 제품·서비스의 R&D, 실용화, 시장형성, 서비스 전달 과정을 전체적으로 검토
- 수요검증단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 방문, 관련제품·서비스 체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 설문조사, 센서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참여관찰, 심층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의 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향 도출
- * 수요검증단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수행과제별 특징에 따라 일부 수정가능

□ 결과정리

- 사업화 검증 과정을 정리한 자료(참여자 명단, 회의록, 사진 등), BM 보고서 등을 정리하여 성과점검 시 자료제출

* 가이드라인은 선정 후,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목적

- 최소기능 제품·서비스에 성능, 디자인, 사용자편의성 등을 개발기간 동안 체험하여, 개선·보완토록 함으로써 최적의 제품·서비스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

□ 구성

- 주체 : 수행기관 및 사전기획지원 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구성
- 인원 : 50명 이상
- 방법 : 해당 제품·서비스의 실 사용자, 제품·서비스의 공급과정에서 연관되는 이해관계자(생산, 유통 등), 전문가(기술성, 사업성) 등으로 구성
 - * 참여인원 중, 실제 제품·서비스의 이용가능 수요처가 반드시 참여
- 시기 : 협약 후 3개월 이내

□ 운영

○ 리빙랩 사전 계획 수립

- 리빙랩 참가자, 진행 일정, 횟수, 방법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 수립
 - * 다양한 문제해결 활동이나 연구 경험, 협업을 통해 제품·서비스를 개선할 의지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 구성, 선별
 - * 공공서비스 제품·서비스의 경우,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

○ 리빙랩 운영 환경 구축

- 일정 규모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 실증활동의 경우, 안정적인 공간 확보
-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리스크 해소를 위해 시험·인증, 표준화, 안전성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

- 사용자 테스트 후, 참여자 만족도 조사, 개선점 등을 도출
- 시제품 제작·테스트 결과를 반영하여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 개발된 제품·서비스는 사용자와 생산자, 연구자, 이해관계자가 다 같이 현장에서 실증

○ 시기 : 개발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리빙랩 운영

○ 협의체 운영 : 수행기관, 사전기획지원 전문기관, 리빙랩 참여자 등이 참여한 공동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문제의 공유와 해결 방안 모색

* 가이드라인은 선정 후,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